

## 자산보관·관리보고서

이 보고서는 집합투자기구재산을 보관·관리하는  
신탁업자가 집합투자재산이 적정하게 운용되었는지  
여부 등에 관하여 확인한 내용을 투자자에게 제공  
하기 위해 “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”  
제 248 조제 1 항에 따라 작성되었습니다.

신탁업자명 : 흥콩상하이은행 서울지점  
문의가능 전화번호 : 02-2004-0065/6955-1004

### 1. 집합투자기구의 개요

- 가. 집합투자기구 명칭: 한화 PLUS 애플채권혼합증  
권상장지수투자신탁(채권혼합)  
나. 집합투자기구 분류: 증권집합투자기구(채권혼합  
형)  
다. 보관·관리기간: 2024.01.01 - 2024.12.31  
라. 집합투자업자: 한화자산운용(펀드판매)  
마. 투자매매업자, 투자중개업자: 한국투자증권,미  
래에셋증권,메리츠증권,NH투자증권,키움증권

### 2. 집합투자계약의 주요 변경사항

| 변경<br>일자            | 변경사유              | 주요 변경내용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
|-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
|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| 변경전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변경후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
| 2024년<br>5월 24<br>일 | -집합투자기<br>구 명칭 변경 | 한화 ARIRANG<br>Apple 채권혼합 F<br>n 증권상장지수<br>투자신탁(채권혼<br>합) | 한화 ARIRANG<br>애플채권혼합증<br>권상장지수투자<br>신탁(채권혼합) |
| 2024년<br>7월 15<br>일 | -집합투자기<br>구 명칭 변경 | 한화 ARIRANG<br>애플채권혼합증<br>권상장지수투자<br>신탁(채권혼합)             | 한화 PLUS<br>애플채권혼합증<br>권상장지수투자<br>신탁(채권혼합)    |

\* 자세한 변경사항은 <http://dart.fss.or.kr>을 통해서  
찾아 보실 수 있습니다.

### 3. 투자운용인력의 변경

| 변경<br>일자   | 변경<br>사유 | 성명  | 협회등록번호     |
|------------|----------|-----|------------|
| 2024/07/23 | 신규       | 김은총 | 2121001337 |
|            | 말소       | 윤준길 | 2111000280 |

\* 자세한 변경사항은 <https://dis.kofia.or.kr/> 을  
통해서 찾아 보실 수 있습니다.

### 4. 집합투자자총회의 결의내용

- 해당사항 없음

### 5. 이해관계인과의 거래의 적격여부를 확인한 경우의 그 내용

- 해당사항 없음

### 6. 회계감사인의 선임·해임에 관한 사항

- 해당사항 없음

### 7. 법 제247조 제5항 각호의 사항 확인

☐ 투자설명서가 법령 및 집합투자계약에 부합하는지

의 여부

- 부합함

☐ 자산운용보고서의 작성이 적정한지 여부

- 적정함

☐ 위험관리방법의 작성이 적정한지 여부

- 해당사항 없음

☐ 집합투자재산의 평가가 공정한지 여부

- 공정함

☐ 집합투자재산의 평가결과에 따라 기준가격이 적정  
하게 산출되었는지 여부

- 적정함

☐ 집합투자재산 명세서와 신탁업자가 보관·관리  
중인 집합투자재산의 내역이 일치하는지 여부

- 일치함

☐ 집합투자업자의 운용지시가 법, 집합투자신규약 또  
는 투자설명서에 위반된 경우 신탁업자의 시정요구 및  
이에 대한 집합투자업자의 이행명세

- 해당사항 없음

☐ 집합투자재산별로 미리 정해진 자산배분명세에 따  
라 매매결과를 공정하게 배분되었는지의 여부

- 본 항목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  
령 제269조 제 1항 제1호에 의거하여 집합투자업자  
가 운용하는 전체 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재산을  
보관·관리하는 신탁업자가 둘 이상인 경우에는  
해당 신탁업자의 확인사항이 아님

☐ 집합투자증권의 추가발행 시 기존 투자자의 이익을  
해칠 염려가 없는지 여부

- 해당사항 없음

### 8. 그 밖에 투자자 보호에 필요한 사항

- 이 투자신탁은 실적배당상품으로 은행예금과는 달리  
예금보험공사의 보호를 받지 못함에 따라 투자원리금  
전액이 보장 또는 보호되지 않습니다.

- 이 투자신탁의 운용 및 투자 등에 관련하여 보다  
자세한 사항은 해당 집합투자업자 홈페이지를 이용할  
수 있습니다.